

# 예 산 총 칙

2009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09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              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  | 일시차입한도액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|
| 합 계                | 330,947,961 | 9,928,439 |
| 일반회계               | 288,648,146 | 8,659,444 |
| 특별회계               | 42,299,815  | 1,268,994 |
| 기타특별회계             | 42,299,815  | 1,268,994 |
| 상수도사업특별회계          | 3,724,610   | 111,738   |
| 수질개선특별회계           | 19,997,091  | 599,913   |
| 농촌주택특별회계           | 15,209      | 456       |
|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       | 565,895     | 16,977    |
| 농업소득기금특별회계         | 3,444,199   | 103,326   |
| 기초생활및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| 281,378     | 8,441     |
|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        | 5,535,313   | 166,059   |
|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        | 4,027,255   | 120,818   |
|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   | 701,211     | 21,036    |
|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    | 3,888,073   | 116,642   |
|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       | 119,581     | 3,587     |

제 2 조 2009년도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서"와 같다.

제 3 조 2009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2,8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1,894,276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다음 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1. 총액인건비에 포함 되는 경비
2.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